

노을 주식회사 정관

제정 2015. 11. 25.

개정 2016. 03. 24.

개정 2017. 03. 26.

개정 2018. 03. 26.

개정 2019. 01. 02.

개정 2019. 01. 31.

전부개정 2020. 03. 25.

개정 2020. 04. 28.

개정 2020. 12. 02.

개정 2021. 03. 31.

개정 2022. 03. 30.

개정 2023. 03. 29.

전 문

회사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적인 문제에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는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기회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지속가능성 철학을 근간으로 조직을 경영하며, 회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사회, 환경적 책임의 이행이 탁월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활동의 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의 창출과 증진에 힘써야 한다. 고객, 구성원, 주주, 파트너,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해관계자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성장, 발전하여야 한다.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지속가능성 철학은 모든 경영활동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 사업, 조직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노을 주식회사"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Noul Co., Ltd." (약호 "Noul")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연, 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 의료용 기기 제조업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1. 체외진단용 제품,원료,보조시약 개발,제조 및 판매업
1. 의료기기 개발,제조 및 판매업
1.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내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ul.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6,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발행 및 주권의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행사의 배제·제한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재무구조 개선,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 ④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잔여재산 분배의 사유 발생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당 회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 10 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상환주식)

- ① 당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환하는 날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 ④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2 조 (전환주식)

- ① 당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원칙적으로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될 경우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등기이사를 제외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재임 또는 재직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 14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공모 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영업상 필요로 또는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전담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할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7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 18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9 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20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21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22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국내외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 18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5 조 (소집)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26 조 (소집권자)

- ③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4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0 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수로서 한다.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3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1 절 이사

제 35 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9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의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42 조 (이사회 및 이사회의 결의)

-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 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표이사

제 45 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당 회사는 대표이사 1인 이상과 필요한 경우에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 ③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46 조 (대표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장 감사

제 47 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의미함)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⑦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8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 49 조 (감사의 수와 선임·해임)

-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단,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는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0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51 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4 조 (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
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
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영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 이상)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7 조 (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7 조의 2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날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8 장 기 타

제 58 조 (사규 등의 제정)

당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59 조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

회사는 매년 결산 시에 회사가 수행한 사업들이 제2조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해당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16. 3. 24.>

본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6.>

본 정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6.>

본 정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

본 정관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5.>

본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0. 4. 28.>

본 정관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0. 12. 2.>

본 정관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는 액면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3. 31.>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단서조항, 제10조,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4조 단서조항,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 2 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 정관은 본사의 비치된 원본과 동일함이 틀림없습니다.

2022 년 3 월 30 일

노을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비동 10층

대표이사 임 찬 양 (인)